

대법원 2021두47219 서훈취소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피고(대통령)가 1962년 김○○(이하 '망인')에게 '건국공로훈장 복장'을 수여하였으나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져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자, 망인의 증손자와 기념재단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

대법원 3부(주심 대법관 노정희)는, '① 원고 재단법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소가 부적법하고, ②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,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되므로,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처분이 적법하다'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(대법원 2024. 4. 12. 선고 2021두47219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- 피고(대통령)는 1962년 김○○(이하 '망인')에게 '건국공로훈장 복장'을 수여하였음
-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고, 이에 대하여 망인의 증손자인 원고 1과 망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 2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2017년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
- 피고는 2018년 망인에 대한 서훈이 구 상훈법(2019. 12. 10. 법률 제

16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망인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음(이하 '이 사건 서훈취소처분')

- ▣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
2. 소송의 경과

- ▣ 제1심: 원고 1 ⇒ 청구기각, 원고 2 ⇒ 소 각하

- ▣ 원심: 항소기각

-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이후 새로 밝혀졌고, 망인의 친일행적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친일행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에 해당하고,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- 원고 2에게는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을 다툼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
- 원고들이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▣ 원고 2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

- ▣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서훈취소사유인 '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'를 판단할 때 서훈처분 이후 공적을 적극적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■ 상고기각

다. 판단 근거

- 원고 2는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을 다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고 있지 않음
- 구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서훈취소사유에는 서훈 수여 당시 조사된 공적사실 자체가 진실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만일 그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서훈대상자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도 포함됨(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2두 26920 판결)
- 망인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로 밝혀졌고, 만일 이 사실이 서훈 심사 당시 밝혀졌더라면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였을 때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하다고 판단됨
- 원고 1은 망인의 해방 이후 공적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,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

4. 판결의 의의

- 독립운동을 이유로 서훈을 수여받은 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이유로 서훈이 취소된 여러 사안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서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음
- 이 사건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처분에 대한 소 제기로 위와 같은 일련의 서훈취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2017년 정부 일부승소 판결 확정[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6두346 판결] 이후 2018년 서훈이 취소되자 원고들이 서훈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

- ▣ 대법원은, 망인의 친일행적이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새롭게 밝혀졌고, 당초 조사된 공적사실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망인의 행적을 그 서훈에 관한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뚜렷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서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